

벤처기업특별법 제정과 벤처기업 육성

기술인력 수급 및 기반기술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벤처기업으로서는 광범위한 기반기술에 대해 선행연구 경험이 있는
정부투자 연구소들의 지원이 가장 절실한 것이다.

21

세기 정보화시대
를 목전에 둔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는 고비용 경제구
조로 인한 저생산성 등 구조적 정체

에서 벗어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
다. 또한 이를 극
복하기 위한 구조
개선도 근본적으로
그 한계를 표출시
키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과거 경제발전의
원동력이었던 대
규모 장치 산업을
통한 소품종 대량
생산 체제가 21

세기 정보화사회에서는 더이상 가치
창출의 원천일 수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결국 다양하고 고급화되는 소비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소규모
대량생산 체제에서 다품종 소량체제
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며, 그 대안으로
산업구조를 고효율, 고부가가치
로 전환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일 것이다.

지난 3월초 출범한 현 경제팀은
이러한 공감대속에서 출범이후 줄곧
벤처기업 육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
와 산업구조 조정을 그 정책의 핵심
으로 삼아왔다.

벤처기업을 통해 경쟁력을 회복한
미국식 구조조정을 모델로 삼아 대기



업 중심의 대량 생산방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경제의 돌파구를 모색해 보자는 구상이었다.

이 구상속에서 현 경제팀은 세부대책을 잇따라 쏟아 놓아 보통사람에게도 “벤처기업”이란 용어가 생소하지 않을 정도가 됐다.

“벤처기업 구상”이 공식화 된지 3개월이 지난 지금은 갖가지 벤처기업 지원책을 총망라한 특별조치법이 정부내 처리과정을 마무리 지은채 임시국회 상정을 기다리고 있다.

당초 이 법의 명칭은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조치법”이었으나, 창업기업 뿐만 아니라 기존기업의 기술 고도화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많아 포괄적인 의미인 “신기술, 기술집약형 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바뀌었다.

또 이 법에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기술담보제, 신기술복덕방, 기술보증제 등 새로운 제도와 벤처기업 전용단지 조성, 벤처기업을 위한 새 주식시장 개설방안 등도 시행에 들어갔거나 확정단계에 있다.

거창한 경제정책들이 발표후 후속처리 과정에서 흐지부지 되거나 퇴색하곤 했던 과거의 경험과 비교해 보면 이번 대책은 일단 추진력면에서 합격점이란 평가를 받을만 하다.

특별조치법의 경우 많은 다른 법에 있는 규제를 배제하는 특례조항을 곳곳에 두고 있어 관련부처간 협의가 쉽지 않기 마련인데, 이러한 성과를 도출한 것에 대해 벤처기업을 경영하는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표시하고 싶다.

그동안 한국에서 벤처기업의 발전이 미진했던 것은 창업에 대한 사회적 제약으로 그 열기가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되지 못한 것에 기인한 점이 컸었다. 그 이면에는 대학과 정부 출연 연구소 등에서 개발된 신기술이 상업화되기 까지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고 이러한 어려움이 발전의 한 저해 요소로 작용한 것이다.

금번의 벤처기업 특별법 즉, 신기술/기술집약형 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이러한 벤처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를 제거하고, 제2의 경제도약의 원동력이 될 벤처기업의 육성과 그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주안점이 두어진 것이다.

즉 금번 특별법은 기존기업의 신기술, 기술집약형 기업으로의 전환 및 신기술, 기술집약형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여 우리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 및 경쟁력제고에 기여하고자 신기술 기업에 대한 금융, 인력, 기술, 입지 등 생산요소의 공급 원활화 및 신기술기업 관련 정부규제 완화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특별조치법의 다양한 지원내용을 직접금융 활성화, 기술 및 인력공급 확대, 입지공급 원활화 등의 측면으로 요약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우선 직접금융 활성화의 측면에서
- ▶ 연, 기금 및 기관투자자의 벤처기업 투자허용
- ▶ 외국인의 벤처기업 투자 허용
- ▶ 벤처기업 발행주식 액면가 1백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
- ▶ 벤처기업의 직접금융조달지원을 위한 세제 혜택 · 창업투자 조합 출자분에 대한 소득 공제
- ▶ 코스닥시장에 등록한 벤처기업의 증권발행에 대한 특례
- ▶ 벤처기업을 위한 새로운 주식시장 개설
- ▶ 벤처기업에 대한 우선적 보증의 실시
- ▶ 벤처기업에 대한 법인세, 소득세, 지방세 감면 등 다양한 금융, 세제 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대기업의 벤처기업 출자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출자 제한 완화나 대형 정부투자 기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의무화도 반영되었고,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비실명 자금에 대한 출처조사 면제는 금융실명제

보완 입법안에 반영됐다.

신기술을 사전평가한 후 보증을 서주는 기술우대특례 보증의 경우 기술신보가 지난 달 12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기술을 담보로 대출해 주는 기술담보제는 지난 5월 중순부터 시범 실시되고 있다.

또한 기술 및 인력 공급 측면에서는

- ▶ 산업재산권을 근거로 한 현물출자 허용
- ▶ STOCK OPTION제도의 활성화
- ▶ 벤처기업에 대한 교수, 연구원의 참여확대
- ▶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의 전직 허용
- ▶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 체계 도입
- ▶ 기술복덕방제도 시행

등이 있다. 이중 대학, 연구소가 개발한 신기술을 기업에 중개해 주는 기술복덕방은 이미 지난달 12일에 서울 구로동에 문을 열었다.

이에 따라 벤처기업이 고급인력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숨통이 트게 되었고, 기술 개발 및 축적에 있어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입지공급 원활화의 측면에서는

- ▶ 벤처기업에 대해 국공유지 지원
- ▶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의 입지 제한 완화
- ▶ 개발부담금, 농지/산지전용 부담금, 교통유발 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면제 등 관련부처들의 난색을 표시해 온 지원책도 확정되었다.

그러나 벤처기업의 입지를 수도권 총량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안은 건설교통부의 강력한 반대로 빠졌다.

이런 정도면 벤처기업 경영인의 입장에서도 너무 벤처기업만을 위한 특혜가 아닌가 할 정도로 벤처기업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이제는 마련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벤처기업의 육성은 모두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 국가를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사족이 될지언정, 현

벤처기업 육성대책에서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점과 필자가 벤처기업을 창업, 성장시키면서 지원이 어렵다고 느꼈던 점 중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몇개만 피력하고자 한다.

첫째,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문제로 벤처기업 범위를 어디까지로 규정하느냐는 문제이다.

현재의 안은 설립시점에서 몇년까지의 기업으로만 못박기보다 벤처캐피털인 창업투자회사의 지분출자 여부와 신기술 보유여부 등을 기준으로 삼아 많은 기업이 폭넓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창업투자회사가 10% 이상의 지분을 출자한 회사를 벤처기업으로 인정할 경우 현재 창업투자회사의 투자관행상 유통업, 영화사, 주유소 등 서비스업종도 벤처기업에 포함돼 벤처기업의 기준이 모호해진다는 문제가 있다.

일부 미꾸라지가 전체 개울물을 흐리게 하듯이, 이러한 일련의 예측못할 과행적 대상에 대한 지원과 그 결과가 한창 성장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벤처기업에 까지 그 영향이 끼칠까 염려되는 바,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정책당국의 각별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둘째, 엔젤(개인투자자)의 직접투자를 보다 자유롭게 풀어줘야 한다는 점이다.

미국의 경우 벤처기업에 대한 엔젤의 직접투자가 벤처캐피털의 간접투자보다 5배나 많고 엔젤이 5년이상 투자할 경우 세금을 50% 면제해 주면서 투자를 유인하고 있다는 사실은 음미해 볼 만한 대목이다.

현재 추진중인 정부안에는 개인차원에서 벤처기업에 대한 자유로운 직접투자를 허용하지 않는 대신 창업투자회사의 투자조합을 통한 간접투자만 허용하고 있다.

세번째로, 벤처기업의 제품개발에 대한 지원강화를 강조하고 싶다.

그 구체적 내용으로 우선 정부 투자 연구소 (ETRI 등)의 “TECHNICAL POOL” 역할 강화가 시급하다. 기술인력 수급 및 기반기술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벤처기업으로서는 광범위한 기반기술에 대해 선행 연구 경험이 있는 정부투자 연구소들의 지원이 가장 절실한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현재 실시되고 있는 기술이전 제도의 변경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기술이전 절차를 간소화하고, 참여를 원하는 모든기업에게 기회부여가 필요하며, 기술이전 비용의 무상지원 등 자립 경영할 수 있을 정도의 지원 개념으로 변화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많은 기술집약적 벤처기업들이 개발자금의 원천으로써 정책자금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자금 대출시에 기술신보 보증 등 많은 절차가 요구되어 실질적인 도움효과가 반감되고 있어, 이의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특혜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전폭적 국산제품 홍보, 사용 및 판매지원, 그리고 이를 통한 적극적 세계진출 지원을 들 수가 있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어느 지원책보다 외산제품과 경쟁하고 있는 벤처기업 입장에서 보면 가장 현실적이고 당면한 문제이다. 외산제품과 동질 또는 그 이상의 품질의 국산 제품을 개발, 출시해도 실소비자의 국산 제품 불신(외제 선호)으로 시장진입에 고생하고 있는 현실속에서, 이러한 불신해소를 위해 정부에서 솔선 사용해 국산제품에 대한 품질보증이 가능토록 하며, 대기업 또는 국민 등에 대해 우수한 국산제품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홍보해 주기를 바란다.

또한 이러한 우수 벤처기업들이 경쟁력 제고를 통해 세계진출을 할 수 있도록 뒷받

**기술이전 절차를 간소화하고, 참여를 원하는 모든기업에게
기회부여가 필요하며, 기술이전 비용의 무상지원 등 자립
경영할 수 있을 정도의 지원 개념으로 변화하여야 할 것이다.**

침을 강화해 주어야 한다.

대기업과 벤처기업의 연대 지원 추진도 그 방안의 하나로 예를 들 수가 있다.

그동안 대기업과 벤처기업의 관계가 단순 하청관계나 자본참여, 기업 인수/합병 등을 통한 수직적 관계가 대부분이었지만, 앞으로는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출발, 대기업의 대소비자 신뢰감 및 판매망과 벤처기업의 첨단기술력 등을 고루 활용하여 동반 세계 진출 및 성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 나아가야 한다.

이상에서 본 여러 사항처럼 벤처기업의 성공적 육성을 위해서는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이 많은 사항이지만, 이미 마련된 정부안에서 보듯이 이미 제도적 장치는 상당히 마련된 셈이다. 다만 이러한 제도들이 현장에서 얼마나 제대로 운영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고, 정책당국의 각별한 사후관리가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지원책들이 제대로 실행될 때 기술력과 발빠른 대응력을 갖고 있는 벤처기업들이 많이 나오고 성장하여, 이들이 21세기 국가 경쟁력의 첨병이 되고 세계화의 주역이 되리라 생각한다.

끝으로, 벤처기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 동안 이러한 지원책이 나오기까지 벤처기업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애써주신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러한 좋은 환경 속에서 벤처기업인들의 분투를 기대한다.